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0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이소희 · 이만희
김상훈 · 이상휘 · 박충권
안철수 · 권영진 · 김용태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‘코인 사설 환전소’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.

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, 환치기,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.

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,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·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,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

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15조의4 신설).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위반행위의 신고 등)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·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4(위반행위의 신고 등)</u> ① <u>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</u> ② <u>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·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</u>